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6.16

제 1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1카합10064 효력정지등 가처분

채 권 자 원용주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길 68-1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하

채 무 자 아산시파크골프협회

아산시 권곡동 331-1

송달장소 아산시 권곡로 47, 101동 1401호 (권곡동 620, 아산더
샵페스트타워아파트)

대표자 직무대행자 이용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신수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합100666호 당선무효결정 취소등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2021. 1. 29. 채권자에 대하여 한 같은 해 1. 15.자 아산시파크골프협회장 선거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위 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협회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 가. 채무자는 아산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회원이다.
- 나. 채무자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21. 1. 15. 아산시파크골프협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선거인 7명이 투표한 결과 채권자가 4표, 이용하가 3표를 각 득표하였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채권자를 채무자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 다. 이 사건 선거 후보자이자 당시 채무자 회장인 이용하는 2021. 1. 18. 채권자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사전선거 및 불법선거 운동

회장선거규정상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음에도, 채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이 되기 전에 회원 강완으로 하여금 선거인 김선희에게 연락하여 채권자를 지지할 것을 종용하게 하였다. 또한 채권자는 충남골프협회장 권영욱과 충남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남창훈으로 하여금 선거인 장기손을 만나 식사하거나, 회원 김재구로 하





여금 선거인 김선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각 채권자를 지지하도록 종용하게 하였다.

② 허위사실 유포

이용하가 선거운동 시 이영욱(골프용품 매장 운영자)에게 골프채와 골프공 각 100개씩 구매해주기로 하고 지지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권자는 선거 전날인 2021. 1. 14. 오후 경 이상덕으로 하여금 선거인 강기선(골프용품 매장 운영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하게 하여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③ 개인정보 유출

채권자는 2021. 1. 8.경 일시불상경 불법하게 수집한 2019년도 채무자 임원 및 이사 명단, 2019년도 충남파크골프협회 시·군협회 임원현황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위 각 명단에 기재된 임원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1. 29. 14:00경 회의를 열어 위 다항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사전선거 운동,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회의에 출석한 선거관리위원 6명(이교식, 서영민, 김두식, 윤석길, 정우영, 강홍식) 중 5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채무자 규약 및 채무자가 소속된 아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회장선거규정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의 본안전 항변 요지

이용하는 채무자의 전임 회장으로 그 임기가 2021. 1. 31. 종료되었고, 이후 채무자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선임된 바도 없으므로, 이용하를 채무자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특정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임원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그 후임 임원의 선임 시까지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또는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임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임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구 임원에게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되고,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하여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규약이나 채무자가 소속된 아산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규정 등 관련 규정에는 회장의 임기 중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고(채무자 규약 제24조, 아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4조), 이 사건과 같이 신임 회장 선거의 당선인 지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회장 직무대행에 관하여는 규정된 바가 없으며, 채무자의 전임 회장인 이용하로 하여금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이용하가 본 가처분 신청 사건에 있어 채무자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요지

채권자는 권영욱, 남창훈, 강완, 김재구로 하여금 선거인 장기순, 김선희에게 채권자를 지지하도록 종용하게 한 사실이 없고(이 사건 이의신청 사유 중 ① 사전선거 및 불법선거 운동), 이상덕으로 하여금 강기선에게 이용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이 사건 이의신청 사유 중 ② 허위사실 유포), 채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채무자와 충남파크골프협회 시·군협회의 임원 등 명단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의원 중 김영호가 채무자 임원을 겸직하고 있어 대의원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려 한 것이고, 위 명단에 기재된 인적사항은 채무자 회원들에게 공지의 사실로 채권자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이 사건 이의신청 사유 중 ③ 개인정보 유출),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이의신청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이에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하고, 본안 판결의 확정 시까지 임시로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인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장의 지위가 있음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의 무효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은 그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와 다른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이의신청 사유 중 ①,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1. 29.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을 하기에 앞서 채권자의 사전선거 및 불법선거 운동 내지 허위사실 유포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김선희, 김영호, 이영옥의 각 확인서 등 일방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위 각 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 등 채권자의 위법행위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소명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채권자 아닌 제3자 즉, 권영옥, 남창훈, 강완, 김재구, 이상덕이 채권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위 자들과 선거운동에 관한 의사연락 내지 공모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직접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이의신청 사유 중 ③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2021. 1. 8. '채무자 협회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 명부 작성자 중 온궁클럽 김영호 대의원 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고자료로 2019년도 채무자 임원 및 이사 명단, 충청남도파크골프 시·군협회 임원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제출한 사실 및 위 명단에 임원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등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사실이 각 소명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아산시체육회 회원종목 회장선거규정(이하 '회장선거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 시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점(제3조 제4호, 제10조 제4항), 선거인을 구성하는 직군 중에는 대의원이 포함되고(제4조 제1항 제1호), 대의원이 종목단체 임원을 겸할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므로(아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8조 제4항), 해당 대의원은 선거인 자격도 없게 되는 점, ② 채권자는 이 사건 선거 1주일 전인 2021. 1. 8.경 선거관리위원회에 채무자 소속 온궁클럽 회장인 대의원 김영호가 채무자 재무이사를 겸직하는 관계로 그의 대의원 및 선거인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 의견서에 대한 근거로서 이 사건 명단을 제출한 점,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채권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영호를 대의원 및 선거인에서 제외하고 대신 강기선을 포함시켰던 점, ④ 채권자는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되었으나 충남아산경찰서는 2021. 6. 2.경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명단을 제출한 것은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로서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와 달리 채권자가 이 사건 명단을 불법하게 수집하여 행사한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이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선거에서의 다수 득표자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무효인 이 사건 당선 무효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하고, 채권자가 이 사건 선거의 당선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여 줄 것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4.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15.

재판장

판사

채대원



판사

김한울



판사

김성하





별지

관련 규정

[규약]

제18조(임원)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하(전문, 생활, 지역, 여성체육 등 직능별 대표이사 1명씩 포함 권고)
- ② 협회의 임원은 해당 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19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1조(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4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6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협회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협회의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협회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협회의 임원의 경력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아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종목단체의 총회는 제5조에 따른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의장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일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의 경우 교사나 지도자 중 1인, 체육동호인 조직의 경우 총무담당자 1인을 추가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등록팀의 경우 교사나 지도자, 체육동호인 조직의 경우 총무담당자)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24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 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아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협회(연맹)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제9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
4. 제10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7.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제4조(선거인) ①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7조¹⁾ 제1항에 따른 대의원
2. 클럽(읍면동 포함) 회원단체의 임원
3. 등록팀의 장이 추천한 등록팀별 지도자 각 1인
4. 대학부 및 일반부의 등록팀별 선수
5. 체육동호인

제9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 후보자 등록공고 전에 선거인 후보자 명부 중에서 시·군 회원단체 및 등록팀에 배정되었던 선거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첨하여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른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 1통을 각 클럽(읍면동 포함) 회원단체 및 등록팀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아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8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은 3일로 한다.
- ③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 ④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9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끝.





정본입니다.

2021.06.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원주사 김용성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